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73 발의연월일: 2020. 11. 12.

발 의 자:이용우·고영인·강준현

홍정민 • 이용빈 • 민병덕

진성준 • 서영석 • 김주영

송영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14조제1항제4호).

법률 제 호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1항제4호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	제14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
정지)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	정지) ①
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	
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
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	
수 있다. 다만, 신용정보회사,	
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	
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	
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	
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기 전	
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	<u>.</u>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	4
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[허	
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	
도(개인신용평가업, 개인사업	
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	
회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개	
사업연도)가 지나지 아니한	
경우는 제외한다]의 자기자본	

(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<u>대차</u>
<u>대조표</u> 상 자산총액에서 부채
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 이
하 같다)이 제6조제2항에 따
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
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
5. ~ 11. (생 략)
② (생 략)

재무
<u> 상태표</u>
5. ~ 11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